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54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관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이의신청 기간 등을 현행화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적용조항 오류를 현행화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11조).
-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이의신청기간 등을 정비함(안 제6조).
- 다. 위원회의 회의록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 및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1. 4. 15.~5. 6.)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5조 및 제6조”를 “제4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7조”를 “제5조”로,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보건소장이 의뢰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를 “접수한 때에는”으로 한다.

③ 보건소장은 수용여부를 직접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를 “제8조”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회의록) ① 시장은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850호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제목외의 부분 전단 중 “제11조제1항”을 “제9조제1항”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u>제5조 및 제6조에</u> 따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보건소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6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u>제7조</u>의 지원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건소장은 선정·지원 기준 등을 확인·검토하여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다만, 선정·지원기준 적용에 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또는 수용여부를 직접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검토의견서를</u></p>	<p>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u>제4조</u>-----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이의신청) ① ----- <u>제5조</u>----- ----- ----- 60일 ----- ----- -----.</p> <p>② ----- ----- ----- ----- ----- ----- -----.</p> <p>다만, <u>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u></p>

첨부하여 시장에게 의뢰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보건소장이 의뢰한 검토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신 설>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수용여부를 직접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 제3항에 따른 -----
----- 접수한 때에는 -----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8조-----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의록) ① 시장은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요구가 있

제14조 (생략)

<신설>

제15조 (생략)

부칙 < 제7850호, 2021. 1. 7.>

제2조(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부칙 < 제7850호, 2021. 1. 7.>

제2조(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동 조례 개정안은 민원인의 이의신청 기간 등을 「민원처리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이용호 (02-2133-7613)